

#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022.10.04 개정본)

## 제1장 총강

### 1조 (선거의 원칙)

- 1) 선거는 前대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2)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조 (선거 시행세칙의 목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생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조 (적용범위)

- 1) 본 세칙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선거(이하 경경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부(과) 학생회장 선거는 해당 학부(과)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과) 선거시행세칙이 없을 시 본 세칙에 준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 4) 본 세칙은 종이 투표와 전자 투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 투표와 전자투표가 구별돼야 하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명시한 세칙을 따른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4조 (선거권)

- 1) 유권자는 현재 재학 중인 본 회원으로 한다.
- 2)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에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한다.
- 3)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선관위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에게 선거인 명부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 4)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학기 졸업 예정자는 투표가 가능하되 투표한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한다.
- 5) 기타 선거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 5조 (피선거권)

- 1) 1인 입후보자 및 2인 1조 입후보자 모두 등록 가능하며, 2인 1조 입후보자의 경우 정,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등록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회원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3) 재학 중인 본 회원으로부터 4개 학부(과) 이상, 총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4개 학부(과) 별도로 각각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 모두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3장 후보자 등록 절차

### 6조 (후보자 추천)

- 1) 후보자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학부(과), 서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추천서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2)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 3) 후보자 추천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 4) 한 후보자에게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 7조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미팅 전까지 선관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자 재적 증명서
- 2) 후보자 성적증명서
- 3) 5조 3항에 의한 추천서
- 4) 대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의 명단과 재적 증명서
- 5)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소개서
- 6) 후보자 사진 (전자파일로 제출)
- 7) 본 세칙 제13장에 의거한 선거공탁금 10만원

### 8조 (입후보자 심사)

- 1)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자격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2) 입후보자가 7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9조 (사퇴규정)

- 1)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2) 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공식 사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사유서를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한다.

#### 10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 룰미팅)

- 1)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입후보자와 대표 참관인으로 하며, 전원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 나. 본 세칙 검토
  - 다. 선전물의 종류와 수량 및 배포시기 결정
  - 라. 후보자 기호결정, 단 경선일 경우 후보자 추천서 배포 전 입후보 하려는 자 모두에게 선관위가 합의한 기호결정의 기준을 공지해야 한다.
  - 마. 유세 방법에 대한 합의
  - 바. 선관위의 선거 관련 정보제공
  - 사. 합동 공청회에 대한 합의 및 제반의 사항
  - 아.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 2) 본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들은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 3) 룰미팅 결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한다.

## 제4장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11조 (위상)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경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본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및 조정하는 권한을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이하 경경운위)로부터 위임받는다.

#### 12조 (목적)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3조 (업무 및 권한)

- 1) 경경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 2) 경경선거 진행 간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3) 본 세칙과 선관위가 각 선본과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4) 선관위는 선거 후 자동 해체된다.

#### 14조 (구성)

- 1)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을 당해 학생회장으로,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부위원

장 (이하 부선거관리위원장)을 부학생회장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은 당해 경계운위로 구성한다.

이때, 경계운위 중 사퇴한 인원은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사퇴로 인한 부재 시 해당 직책은 경계운위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질 경우 선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한다.

4)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 8조에 의거해 선관위 산하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15조 (위원의 해임)

1)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나. 선거에 입후보할 때

다. 본회 회원이 아닐 때

2)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관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4)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2/3이상 동의하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5)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관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6) 부결 시 선관위원으로의 신분은 유지된다.

### 16조 (소집, 개최 및 의결)

1)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 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혹은 선관위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선관위원(선관위원장 및 부선거관리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3) 의결을 요하는 사안은 선관위원(선관위원장 및 부선거관리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을 시 선관위원장과 부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각자 선관위 내에서 의결권을 하나만 가진다.

### 17조 (학부(과) 선거관리위원회)

1) 학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각 학부(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

2) 학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 유관기관

## -제1절 선거운동본부-

### 18조 (역할)

- 1)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 2)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 3)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 4) 선본은 모든 학우에게 차별 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 19조 (구성 및 자격)

- 1) 선본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선관위원, 학생회 집행부 및 대표자, 재적 중이 아닌자는 제외된다.
- 2)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 3) 정, 부후보는 당해 경정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 20조 (선거운동본부장)

- 1) 선본장은 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들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 2)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 21조 (선거운동본부원)

- 1)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 2)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 22조 (선본의 신고)

- 1)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학부(과), 선본 내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최초 선본원 등록은 선거운동본부 현황내역서를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3) 선본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 소속의 선본원인 사람을 선본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원 신고를 반려하고 책임이 있는 선본에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모두에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 23조 (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진행한다.
- 2) 선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 공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선관위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선본은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24조 (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 2)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 3)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 4)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 -2절 투표참관인-

#### 25조 (통칙)

- 1)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 2) 각 후보자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26조 (자격)

- 1)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하며 대표 참관인은 선본장으로 한다.
- 2)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각 투표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직 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관인 교체는 다음 날 적용된다. 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 27조 (이의 제기)

-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해당 선본은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8조 (규제 조건)

- 1)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 2)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3)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참관인의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가.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
  - 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포함)
  - 다.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4)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29조 (기타 사항)

- 1) 참관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 측의 이익을 기각한다.
- 2)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3)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3절 개표 참관인-

### 30조 (역할)

- 1) 각 후보의 대표 참관인은 투표 2일째 낮 12시까지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개표 참관인은 개표 시작 1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 개표 참관인은 개표상황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 참관인의 교체는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진행한다.)

## 제6장 선거

## -1절 총칙-

### 31조 (선거일정)

- 1)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거일은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이하 경경운위)에서 결정한다.
- 3)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4) 2항의 일정은 경경운위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최소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2절 선거운동-

### 32조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2)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가. 후보자 추천
  - 나. 후보자 추대 모임
-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 33조 (부정선거운동)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가. 매수 및 이해 유도

나. 금품살포

다. 선거의 자유 방해

라. 선전 방해 :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마.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바. 선관위 방해

사. 허위 사실 유포

아. 후보자 비방

자.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차.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물미팅에서 합의된 장소 이외의 모든 곳이 해당한다.)

카.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심행위는 선관위의 판단 하에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거나 선관위로의 제보가 있거나, 공론화 된 경우 조사한다.)

타.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

파. 선관위 의결을 통한 기타 본 세칙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2) 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8장에 따른다.

## -3절 선거유세-

### 34조 (통칙)

유세는 개별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관련 제반사항은 물미팅에서 정한다.

### 35조 (개별유세)

1)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 연설회,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 물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2)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 한다.

3)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 36조 (합동유세)

1) 선관위는 1회 이상의 합동유세를 개최할 수 있다.

2) 합동유세의 날짜와 순서는 물미팅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3) 공고된 유세 시간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 유세를 포함 50분 이내로 한다. (단, 유세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 5)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한다.
- 6) 타 후보자의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 7) 각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하는 형태의 유세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 8) 이외의 합동유세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 책임진다.
- 9) 합동유세의 형식은 각 선본과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선거문화제와 결합하는 합동유세 등)

### 37조 (합동 공청회)

- 1) 합동 공청회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 2) 후보자는 합동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 3) 합동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참석자의 서면 질의로 구성된다.

## 제7장 이의제기

### 38조 (이의 제기)

- 1)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는 각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
- 2) 선거 운동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 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 39조 (이의 제기의 처리)

- 1)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2) 이의 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석에 출석인원의 과반수 의결로 하며 이를 각 선본장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 제8장 징계

### -1절 총칙-

### 40조 (정의)

징계라 함은 본 세칙의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기타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41조 (징계의 종류)

- 1)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누적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2)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각각 44조, 45조에 의거한다.

#### 42조 (징계 조치의 경우)

- 1) 본 세칙 19조 1항을 위반하며 구성된 선본의 후보에 경고 1회를 준다.
- 2)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 3) 34조에 준하여 물미팅에서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유세를 실시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4) 35조 3항을 위반하는 유인물 배포 시 경고 1회를 준다.
- 5) 33조 2항에 준하여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 6) 52조 2항에 준하여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 43조 (징계의 통보)

- 1) 시정 명령과 주의는 선관위원이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2)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3)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를 12시간 이내에 공개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를 통해 게시한다. (선거 선전물량에 포함)
- 4)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가.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대자보에 공개 (공개 사과문과 함께)
  - 나.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의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합동유세 시 유세시간 20분 감축
  - 다.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 -2절 징계의 의결-

#### 44조 (임의적 징계)

- 1)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5조 (필요적 징계)

- 1)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항의 경우 제외)를 말한다.
- 2) 필요적 징계를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이 각 규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선관위의 과반수 이상 의결에 따라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 46조 (재심의)

대표 참관인은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를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최대 한 번의 재심의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절차는 44조와 45조를 따른다.

## 제9장 투표

### -1절 총칙-

#### 47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 1) 투표는 이틀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표시간은 첫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 둘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로 정하며, 지식경영학부생에  
한하여 수업시간을 고려하고자 투표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한다. (단, 선관위의 과반수 이상 의결에 따라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3)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경우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다.

#### 48조 (투표용지)

-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 2)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3) 투표용지(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란을 포함해야 한다.

#### 49조 (투표구 및 투표소)

- 1) 투표소에는 선관위 또는 해당 학부(과)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 2) 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 50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 1) 중앙대학교 학생증
- 2) 국가인정 자격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으로 제한)
- 3)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학부  
(과) 사무실에서 학번대조가 가능한자)

#### 51조 (투표절차)

- 1)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가. 선관위에 의한 신분확인  
나. 선거인 명부 확인  
다. 투표용지 배부  
라. 투표 실시

- 2) 전자투표 시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가. 선관위에 의한 신분확인  
나. 선거인 명부 확인  
다. 인증번호 배부  
라. 전자투표 실시

#### 52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 1) 투표소에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만 있을 수 있다.
- 2) 선관위는 투표소에서의 선거운동행위를 제재해야 한다. 단, 해당 행위자가 선본 구성원일 경우 해당 선본을 징계한다.

### -2절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 53조 (투표함 이송)

- 1) 투표함은 투표당일 시작 30분전에 선관위원이 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구로 이송한다.
- 2) 투표함은 이송 중에 반드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 3)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의 입회 아래 선관위에게 인수한다.

#### 54조 (투표 마감 후 이송)

- 1)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 2)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 및 물품은 다음과 같다.
  - 가. 선거인 명부
  - 나. 남은 투표용지
  - 다. 제반 기표 용품

#### 55조 (투표함 선관위 도착 후)

- 1)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은 투표함, 54조 2항의 서류 및 물품 등을 인수한 즉시 이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2) 각 투표소와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 간 이상에 대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 56조 (투표함의 보관)

- 1)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선관위실 내 투표함 보관이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듣고 선관위 내 논의를 거쳐 학내의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3) 투표함은 투표가 마감된 후 익일 투표 시작 시까지 반드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 제10장 개표

### -1절 총칙-

#### 57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58조 (통칙)

- 1) 개표는 선관위원만이 할 수 있다.
- 2) 표의 유, 무효표 및 특정 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 59조 (개표장)

- 1)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2) 개표절차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 3) 각 선본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60조 (개표소)

- 1)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 2) 개표소에서는 선관위원과 개표 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 3)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 4) 개표소에는 선관위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 61조 (개표절차)

- 1)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가. 투표인 수 공고
  - 나. 투표함 개봉
  - 다. 개표
  - 라. 개표 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마.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바. 현황판에 기재
- 2) 전자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가. 투표인 수 공고
  - 나.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중앙선관위원장, 전자투표 시행업체가 갖고 있다.)
  - 다. 개표
  - 라. 개표결과 공개 및 공지

### 62조 (무효투표)

표처리에 대한 논의결과는 개표가 끝난 후 개표결과와 함께 공지한다.

- 1)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가.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다.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라.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 2) 전자투표 시 기계적 오류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표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 63조 (기권투표)

- 1) 기권투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 2)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 64조 (효력)

- 1)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 2)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고, 연장 투표 후에도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의 논의 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 3)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

## 제11장 당선

### 65조 (당선의 기준)

- 1) 종이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한다.)
- 2) 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기권표보다 커야한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 3)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실시한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한다.

### 66조 (당선공고)

-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개표결과를 포함한 당선공고를 공지한다.
- 2)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선관위를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위원 1/2이상으로 한다.)
- 4)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 공고를 한다.

## 제12장 재투표 및 재선거

### -1절 재투표-

### 67조 (재투표)

- 1) 재투표의 경우, 기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존 투표의 종료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투표 행위를 일컫는다.
- 2) 재투표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 3) 이의제기 기간 중 접수된 이의가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수용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4)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5) 투표부터 개표까지 모든 사항은 기존 세칙의 절차를 따른다.

#### 68조 (결선투표)

결선투표는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며, 67조에서 정의한 재투표 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효표와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 1)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의 득표수의 차이가 기권표수와 무효표수의 합보다 적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최다득표자와의 득표차가 무효표와 기권표수 합을 범위에 있는 후보자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 2) 후보 둘 이상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해당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 -2절 재선거-

#### 69조 (재선거)

- 1)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시작하여 행하는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 2) 64조 1, 2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 3) 68조 2항에서 명시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경우는 선관위의 논의 하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4)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 5)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 제6장 38조 4항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절차는 재선거와 동일하다.

## 제13장 선거자금 공영제도

#### 70조 (목적)

경정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고 좋은 정책을 가진 모든 학우에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경영경제대학에 배부된 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

#### 71조 (운영원칙)

- 1) 선거자금 공영제도는 72조에 위배되지 않은 선본에 한해 물미팅을 통하여 정해진 선전물 중 각 선본이 공통으로 제작하는 인쇄물의 일부(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학기 학생회비 중 10% 이내에서 집행한다.
- 2) 1항의 해당학기 학생회비의 기준은 당선확정공고 시점의 총 경영경제대학 학생회비 잔고로 한다.
- 3) 72조를 위배하지 않는 선본들에 대해 집행하는 총 선거자금액은 1항의 해당학기 학생회비의 10% 초과해선 안된다.
- 4) 선거자금 공영제도로 사용할 홍보용 인쇄물의 종류, 개수, 규격 등은 물미팅에서 정하도록 한다.
- 5) 선거자금 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유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공탁금 10만원씩을 선관위에 위탁하고 당선공고와 함께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 단, 72조에 위배되는 선본의 경우 해당 선본의 공탁금은 선관위에 의해 해당학기 학생회비에 포함한다.

6) 선거자금 공영제도를 통하여 집행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거선전물과 인쇄물은 각 선본에서 자력으로 집행한다.

#### **72조 (조건)**

선거자금 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본에 집행된다.

- 1) 본 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본
- 2) 개표 후 총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본
- 3)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본

## **제14장 부칙**

#### **73조 (선거지침의 개정)**

본 세칙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 제12장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결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가 인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기구에서 결정한다.

#### **74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 **75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 발생)**

본 세칙은 경영경제대학 선관위의 동의를 거쳐 차기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76조 (기타)**

본 세칙은 종이투표에 기반을 두어 제정된 것이기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본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할 수 있다.